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9. 16(금) 10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32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2. 개정이유

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책 추진을 보다 내실화하고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- 나.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(안 제3조의2 신설)
- 다. 근로 청소년을 사용자로부터 보호를 규정함(안 제3조의3 신설)
- 라.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규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(1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, 제8조, 제8조의2
 - (2) 「근로기준법」 제6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2. 9. . ~ 9. 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의 증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책 추진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함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 -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
- 2)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(안 제3조의2 신설)
 - 「헌법」과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명시함
- 3) 근로 청소년을 사용자로부터 보호를 규정함(안 제3조의3 신설)
- 4)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규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의 증진을 위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청소년 기본법

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5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“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제8조의2(교육 및 홍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.>

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.>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[제목개정 2016. 3. 2.]

□ 근로기준법

[시행 2021. 11. 19.] [법률 제18176호, 2021. 5. 18., 일부개정]

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 ① 15세 미만인 사람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, 2020. 5. 26.>

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(職種)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20. 5. 26.>